



# 보 도 자 료



보도 일시	(인터넷) 2022. 1. 18.(화) 11:20 (지 면) 2022. 1. 19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1. 17.(월) 15:30
담당 부서	학생지원국 학생건강정책과	책임자	과 장 정희권 (044-203-6877)
		담당자	교육연구관 양장묵 (044-203-6544)

## 코로나우울 심리회복·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의료비 지원 -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발표-

### 주요 내용

- 코로나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 등 4개 중점사업 추진
-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 대상 보완적 의료비 지급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의 정신건강과 백신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신체건강의 회복을 돕고자 「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」을 1월 18일(화) 발표하였다.
  - 코로나19로 인한 불안, 우울,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·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에 치료비로 각각 최대 3백만 원(최대 총 6백만 원)을 지원한다.
    - 또한, 정신건강 위기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을 위해 365일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「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망(“다들어줄 개”）」도 지속 운영한다.
  -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\* 이상반응 등이 발생하였으나,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
    - \*\*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완적 의료비를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
    - \* 증상의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
    - \*\*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‘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’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‘기각’ 결정

□ 「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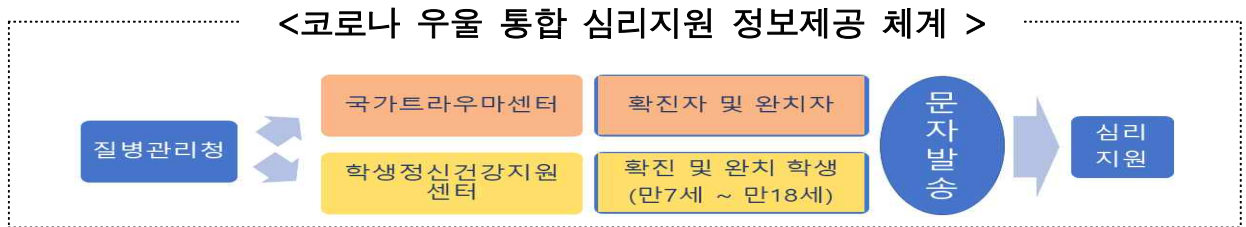
## 1. 코로나우울 심리회복 지원

□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우울, 불안,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며, 정신건강 고위험군(자살위험군) 대상 심리·정서 회복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.

- ※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 : (2019) 2.5명 → (2020) 2.7명 → (2021) 3.6명(잠정)
- ※ 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(2021년) 결과 ‘관심군(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)’ : 검사 대상(초1·4, 중1, 고1 학년, 총 173만 명) 중 8만 명(4.6%)(우선관리군 5.3만 명, 일반관리군 2.7만 명)

□ 우선,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하여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.

- ※ 2020.5월 이후 현재까지 총 확진 학생 수 : 7만9천여 명(유·초·중·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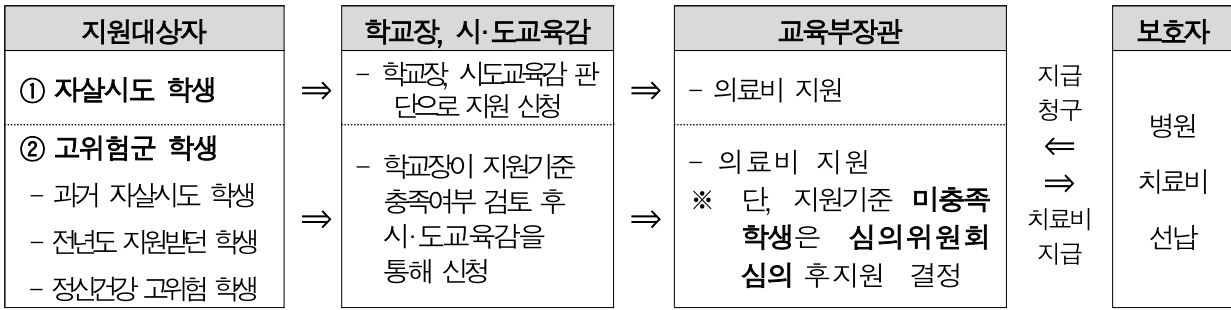


- ※ 주요 실적(2021) : 코로나19 확진 학생(보호자) 심리지원 정보제공(69,691건, 직통전화(핫라인) 상담 223건)
- ※ 교육부 심리지원단(정신건강전문) : 60명(2020) → 111명(2021) → 120명 예상(2022)
-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경우, 교육부와 신경정신건강의학회의 업무협약(2020.5.15.) 체결에 따라 12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한다.

□ 자살·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를 각각 최대 3백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.

-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의료비를 지원한다.

<치료비 지원 절차>



- 또한,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‘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’ 사업을 실시한다.
-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병·의원 등과 연계하며 교직원 상담(컨설팅), 학부모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맞춤형 통합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.
- 마지막으로,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·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기반으로 24시간 제공한다.
- 상담 도중 자살 시도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119·112, 병원 등이 즉각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연계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---

## 2.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

---

- 2022년 1월 18일 기준 13~18세 소아·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1차 78.8%, 2차 67.8% 수준이며, 청소년(13세~18세)의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(2021.10.18 이후)은 0.27%\*, 이 중 중대한 이상반응\*\* 신고 건수는 289건으로 확인되었다.
- \* 전체 예방접종 4,063,188건 중 11,082건 신고(1·2차 합계)
- \*\* 사망, 아나필락시스 의심, 주요 이상반응(중환자실 입원, 생명위중, 영구장애/후유증) 등
- ※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되었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(출처 : 질병관리청)

□ 백신접종 이상반응 청소년은 ‘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’에 따라 1차적으로 질병관리청에 국가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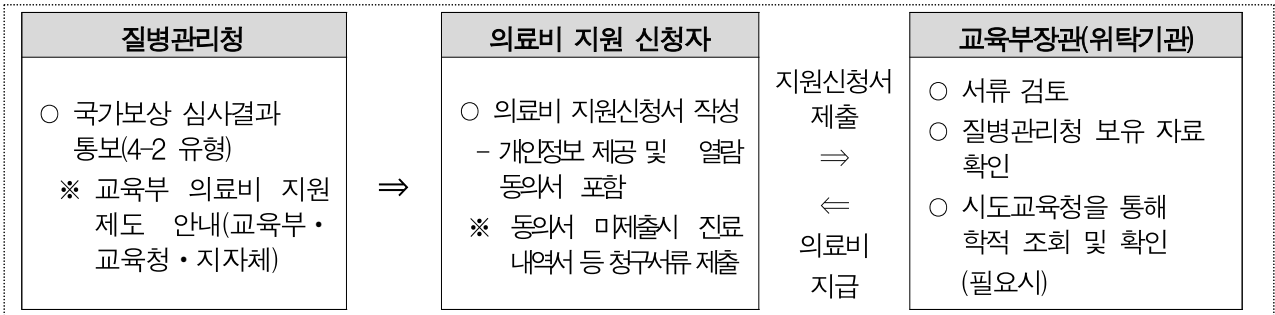
○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\*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(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포함)를 제출하면,

\* 한국교육환경보호원(2018. 2월 교육부장관 설립, 충북 청주 오송 소재)

○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, 일정 조건\*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한다.

\* 교육급여(중위소득 50% 이하)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

<지원 절차>



□ 이번 지원계획에 따르면, 국가보상제도 신청 이후 심의 및 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(최장 120일)을 고려하여, 사업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,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.

○ 중증 이상반응 학생에 대한 청소년의 건강회복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고려하여, 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신속하게 확보·지급하게 된다.

□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, 학생 학부모의 백신접종 부작용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.”라고 밝히며,

- 또한, “교육부는 우리 학생들이 건강을 회복하고, 백신접종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 더 두텁게 보호받도록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, 세심하게 실행하도록 하겠다.”고 강조했다.

- 【붙임】** 1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개요  
2.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 
3. 주요 질의응답(Q&A)



# 붙임1

##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 개요

### □ 추진배경

- 코로나19 장기화 인한 학생 정신건강 및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따른 신체건강 회복지원을 통한 학습권 보호 강화
  - 학생 우울, 스트레스, 자살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심리·정서 행동 회복 지원 및 백신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에 대하여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**보완적 의료비 지원**
  - ※ 10만 명당 학생 자살자 수 : ('19) 2.5명 → ('20) 2.7명 → ('21) 3.6명(잠정)
  - ※ 학생정서·행동특성검사(2021년) 결과 '관심군(정신건강 지속관리 필요 학생)' : 검사 대상(초·4, 중1, 고1 학년, 총 173만 명) 중 8만 명(4.6%)(우선관리군 5.3만 명, 일반관리군 2.7만 명)

### □ 지원방안

#### ①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

- (확진자·완치자 심리회복 지원) 코로나19 확진·완치 학생(만7세 이상 18세 이하) 대상 심리지원 정보 제공\* 및 정신과 전문 의료서비스\*\* 제공
  - \* 주요 실적('21.) : 코로나19 확진 학생(보호자) 심리지원 정보제공(69,691건, 핫라인 상담 223건)
  - \*\*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와 업무협약('20.5월)을 통해 자원봉사 형태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
  - ※ 교육부 심리지원단(정신건강전문) : 60명('20.) → 111명('21.) → 120명 예상('22.)

- (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) 자살자해 시도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대상 **신체·정신치료비**(치료비 실비 기준 최대 각 3백만원 한도) 지원

지원대상자	학교장, 시·도교육감	교육부장관	보호자
① 자살시도 학생	⇒ 학교장 시도교육감 판단으로 지원 신청	⇒ - 의료비 지원	지급 청구
② 고위험군 학생 - 과거 자살시도 학생 - 전년도 지원받던 학생 -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	⇒ 학교장이 지원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시·도교육감을 통해 신청	⇒ - 의료비 지원 ※ 단 지원기준 미충족 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 결정	← ⇒ 치료비 지급 선납

※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예산 : ('21) 1,540백만원 → ('22) 1,540백만원

- (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) 전문기관(병원 등) 미연계 및 의료 취약지역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진단, 교직원 컨설팅, 학부모 상담 등 사회·가정적 요인에 따른 **맞춤형 통합지원강화**
  - ※ 17개 시도 거점센터 운영 / 예산(국가시책 특교) : ('21.) 81.26억 → ('22.) 85억

- (위기문자 상담망 운영) 자살(자해) 시도 및 정신건강 위기 학생 개입을 위해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("다들어줄 개") 지원



※ 예산(국가시책 특교) : ('22.) 20.5억(위기문자 상담망 운영+학생 정신건강 증진 사업)

## ②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

- (사업기간) 2022.2. ~ 2023.5.

※ 국가보상 심의기간(최장 120일) 및 지급 신청 후 검토에 소요되는 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 설정, 추후 코로나-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요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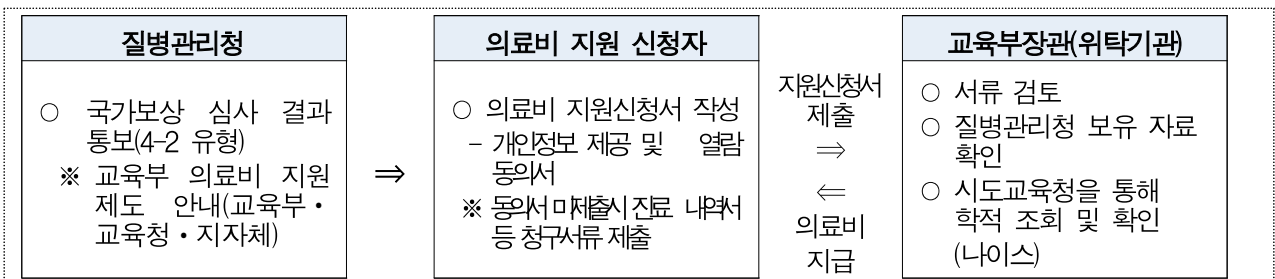
- (지원대상)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,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

<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심사기준>

구분	심의 기준	보상여부
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(probably not related, unlikely)	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,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(④-1)	중증환자 등 의료비 지원
	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(④-2)	교육부 추가사업

※ 명확히 인과성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된 신청건은 지원대상에 미포함

- (지원절차)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각 결정(4 유형) 통보를 받은 자가 교육부(위탁기관)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 → 교육부는 지급 제외 항목 확인 후 의료비 지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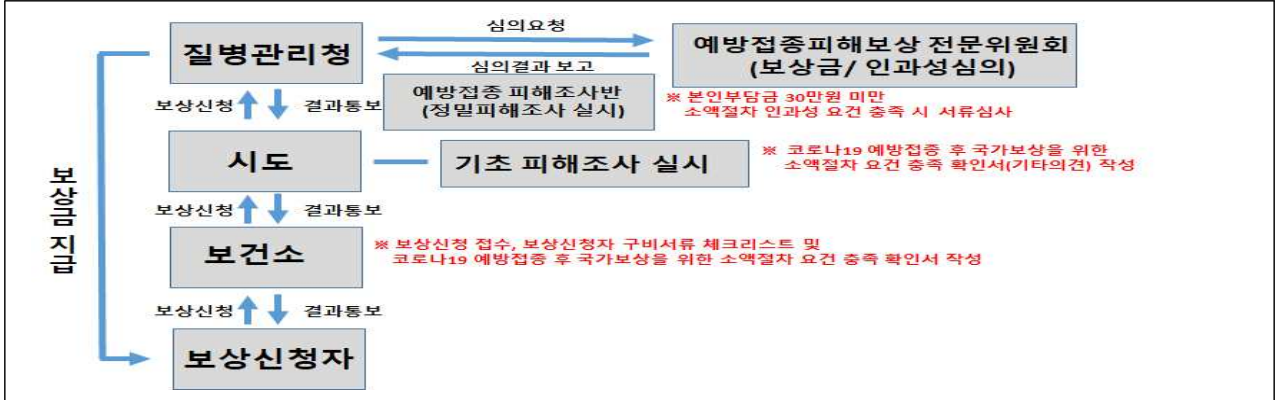
- (지급한도) 개인별 5백만원 한도(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)

※ 재원 : 재해대책 특별교부금

## 붙임2

# 코로나-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(질병관리청)

### □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및 심의절차



※ 심의기한 :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

### □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

구분	심의 기준	보상여부
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(definitely related, definite)	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,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,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,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	피해보상
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(probably related, probable)	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,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,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	
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(possibly related, possible)	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,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,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	
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(probably not related, unlikely)	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,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(④-1)	중증환자 등 의료비 지원
	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	교육부 추가
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(definitely not related)	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	
	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	
	③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	

#### ☞ 참고사항

1. 인과성 인정 반응 : 아나필락시스, 혈소판감소혈전증(아데노바이러스 백신), 국소이상반응, 전신반응
  2. ④-1 이상반응 : 심근염, 심낭염, 길랑-바레 증후군, 면역혈소판 감소증,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, 모세혈관누출 증후군, 혈소판감소성이 없는 뇌정맥동 혈전(아데노바이러스 백신)
- ※ 2022.1월부터 의료비 1인당 3,000만원 한도 및 사망위로금 5,000만원 정액 지원



### **붙임3** 주요 질의응답(Q&A)

#### 코로나 우울 심리회복 지원

**Q1.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한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절차는?**

-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께서는 소정의 증빙서류(치료비 영수증, 전문의 소견서, 개인정보보호 동의서 등)를 학교(교육청)로 제출하면,
  - 사업수행기관에서 소정의 심의 절차 후 신체상해 및 정신과 병의원 치료비(각각 최대 3백만원 한도)를 실비로 지원함

**Q2. 학생 위기문자 상담망 이용 방법은?**

- 전용어플 ‘다들어줄개’, 문자(1661-5004)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접속할 수 있으며,
  - 실시간 채팅 형식의 상담을 통해 교우관계, 가족문제, 심리문제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## □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방안

### 1. (신청 대상) 교육부가 지원하는 “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 사업”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?

-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때 만 18세 이하 청소년으로, 접종을 받은 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,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2. (이상반응 인정기간)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있었던 경우로 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?

- 현재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길랑-바레증후군\*의 잠복기가 42일이고, 국내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가 접종 후 72일까지\*\* 신고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,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접종 후 90일 내로 정하였습니다.

\* 말초신경과 뇌신경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,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염증성 질환으로 백신접종 인과성이 인정되는 최장 잠복기로 알려져 있음

\*\* 현재 국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바탕으로 함

### 3. (중증 이상반응) 중증 이상반응 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?

- 중증 이상반응 등은 의료적 특정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, 예방접종 피해자가 진료비\*로 본인부담금을 30만원 이상 부담한 경우입니다.

\*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공포·시행예정(22.1월 중)  
: 30만원 미만 의료비의 결정 및 지급 권한을 시·도지사에게 위임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가 본 사업의 추진 기관으로 지정할 위탁수행기관(한국교육환경보호원)에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4. (소급 가능여부) 2021년도에 백신접종을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증이상반응이 있었던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**

- 신청 대상이 접종 당시에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므로, 2021년도에 백신접종 했던 고등학교 3학년(2004.1.1. ~ 2004.12.31. 출생) 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국가보상을 신청하였으나,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 (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)

**5. (지원 범위) 교육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은?**

- 교육부가 “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”으로 지원하는 의료비는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생한 의료비이며, 정액 간병비\*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 
\* 정액 간병비는 입원진료한 경우로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신청 가능
- 지원금액은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,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\*가 예방접종으로 부담한 의료비가 5백만 원을 초과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5백만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.
- 다만, 국가보상제도에 따른 지급 제외기준을 준용하여, 물리치료, 이·미용, 보약, 1인 병실사용 비용 등 이상반응 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과 장애진단비 및 사망 시 장제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*7. (지급 횟수) 중증 이상반응으로 여러 번 진료를 받았는데 지원 신청도 여러 번 할 수 있나요?**

- 1인당 최대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진료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니, 진료를 받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.

**8. (중복 보상 가능여부) 국가보상신청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추가로 교육부의 “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”을 신청할 수 있나요?**

- 교육부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었으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,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참고로, 명확하게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없는 경우\*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 
\*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,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,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

**9. (지원 절차) 국가보상 신청 후 교육부 “백신접종 청소년 건강회복 지원사업”을 신청하는 경우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나요?**

- 교육부 지원사업은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의료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다만, 의료비 신청서 제출 시 개인정보 제공 및 열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보관 중인 관련 서류를 공유받아 활용할 예정으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

**10. (지원 시기 및 절차) 언제부터 어디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?**

-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, 인과성이 부족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, 2022년 2월부터 사업수행기관(한국교육환경보호원)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교 또는 기 신청한 국가보상 청구 결과 통보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.
- 본 사업기간은 2022. 2월부터 2023. 5월 말까지이며, 이후 지속 추진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.